재임용 탈락자, 그들은 구제될 수 있나

이혜인 기자 kirufif@skku.edu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 이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이들은 바로 교원들이다. 이들이 소신껏 연구와 교육에 힘쓰기 위해선 인사권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의 배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에는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원지위법정주의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대학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에 대학부에서는 교원재임용제도 와 비정년트랙교원제도 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취재해봤다.

교수재임용제란 각 학교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원과 재계약을 맺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75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학교 법인 측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재임용 심사로 인해 부당하게 재임용에 탈락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더욱이 05년 법 개정 이전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재임용에 탈락한 교원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할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규정돼 있지 않아 교원의 지위가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재심사 청구권 명시돼 있지않아

이런 절차적 문제로 인해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원이 구제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나마 구제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김민수(디자인학부) 전 교수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김 전 교수는 98년 서울대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임용 탈락이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서울대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비난한 데 대한 보복성 탈락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후 승소하기까지는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우리 학교 김명호(수학) 전 교수 또한 지난 95년 재임용 탈락 후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김 전 교수는 95년도 본고사 수학 문제의 오류를 지적했고 그 해 교수 승진 심사와 재임용에서 탈락해 역시 보복성 탈락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정당한 심사를 거친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후 김 전 교수는 홀로 법정 싸움을 계속했지만 모두 패소, 03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 교특법)의 위헌판결 이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밖에도 05년 1월 27일 이전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 특별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사건이 2백14건에 이른다는 것은 그동안은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을 대변한다.

절차는 마련됐다지만…

이처럼 기존의 교수기간임용제와 교특법에는 재임용 탈락 교원이 재심을 청구할 권리조차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기존 법안들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소원이 제기됐고 03년 2월에 교수기간임용제, 같은 해 12월에 교특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져 법안이 개정됐다. 따라서 현재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이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05년 1월 27일 이전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이 때 제정된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이

▪ 관련사진

가장 많이 본 기사

▪ "학군단 가방에는
▪ 학부제, "유동적
▪ 조작된 북한 해체
▪ 쾌적한 환경을 만들
▪ 건강한 대자보 문화
▪ 휴먼네트워킹 사업
▪ ▲해오름식
▪ 새로운 시도로 주목
▪ 글로벌 리더십 특강
▪ [문화인과의 동행]

그러나 이런 재심 구제 절차가 마련됐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법은 애초에 제정될 때부터 소극적인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별위에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도 그 교원을 바로 복직시킬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05년 1월 27일 이후의 재임용 탈락 사건 재심을 맡는 심사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 심사위 측은 "다른 징계에 관해서는 심사위 결정이 바로 적용되지만 재임용은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며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특별위에서 심사한 재임용 탈락 사건 71건 중 35건이 취소인용 됐지만 해당 교원이 복직한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특별위 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비판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특별위는 존속기간이 제한돼 있고 그 전문성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 김상곤 한신대 교수) 이성대 교권쟁의실장은 "재심사한 사건 중 취소인용 된 비율이 생각보다 낮다"며 특별위의 심사에 대해 "객관적 연구 실적과 교수방식 등 학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주관적 정황과 학교측의 의견까지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앞으로는 심사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법인 측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교특법이 개정될 전망이어서 계약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교원의 위치는 더욱 위태로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법인이 교수를 계약의 형태로 고용하는 교수계약제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성신여대 김향기(법) 교수는 03년도 3월 10일자 교수신문을 통해 "교수 계약제가 교육자를 지식을 파는 근로자로 전락시키고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교원의 소신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법 정비를 촉구했다.

입력 : 2006년 04월 10일 17:59:13 / 수정 : 2006년 04월 10일 18:07:30

이혜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back ▲ top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기사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보도 | 여론/칼럼 | 기획보도 |

Copyright ⓒ 2003 성대신문 A